

# 2017년 이렇게 달라집니다

## 보건·사회복지·공공안전

### 1. 제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신설

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신기술 분야 고급·융합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신설·추진합니다.

- 특히,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현장에서 활용할 고급·융합인력 부족에 대응하고,
  - 민간훈련시장에서 새로운 과정개발 및 투자리스크 등으로 자생적으로 훈련과정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직업훈련과정을 신설하여 민간에 확산할 계획입니다.
- 우선, 공공훈련기관인 폴리텍을 Test-bed로 4차 산업혁명분야 훈련과정을 신규 개발하고, 민간 훈련을 통해 확산 가능성이 높은 과정을 중심으로 매뉴얼을 개발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.
  - 데이터융합SW(빅데이터 기반), 의료바이오, 임베디드시스템(스마트팩토리 실무)과정이 '17년 우선 매뉴얼 개발 및 공개 대상입니다.
- 민간에서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관을 공모하여 선도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
  - 훈련비 등 집중적인 지원을 토대로 고급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.

#### 2017년도 제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사업 신설

**추진배경**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확대 가능성 높은 신산업 분야에 직업훈련을 통해 핵심인재 양성 필요

**주요내용** ① 한국폴리텍대학을 테스트 베드(Test-Bed)로 하여 매년 훈련과정 신규 개발, 훈련 종료 후 우수과정은 매뉴얼화하여 공개

② 민간의 역량있는 기관을 선도 훈련기관으로 선정하고 훈련과정 개설 및 운영 집중 지원

**시행일** 2017년 1월 훈련기관 공모, 2월~ 훈련생 모집

## 2.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생 자부담률 개편

훈련 직종별 취업성파에 따라 훈련생의 훈련비 개인부담 편차를 확대할 계획입니다

- 지금까지 훈련생의 훈련비 개인부담 비율은 최소 20%에서 최대 50%까지였으나, 2017년 1월부터 운영되는 훈련과정의 훈련비 개인부담 비율은 최소 5%에서 최대 80%까지 확대됩니다.  
- 취업률이 높은 훈련 직종은 개인부담을 낮추고, 취업률이 낮은 훈련 직종은 개인부담을 높여 취업성과가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훈련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.
- 또한, 그동안 우대지원 받았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훈련비 개인부담 비율도 취업성파에 따라 확대됩니다.  
- 훈련비 개인부담이 없었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도 취업률이 낮은 직종의 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 훈련비의 10%를 개인이 부담해야 하고,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개인부담 비율은 50%(기존 30%)로 확대됩니다.

### 2017년도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의 훈련생 자부담률 개편

**추진배경** 취업성과와 훈련생 개인부담 간 연계 강화를 통한 고성과 직종 훈련 확대

**주요내용** ① 훈련생의 훈련비 개인부담 비율 : 20~50%→5~80%  
②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개인부담 비율 : 0~30%→0~50%

**시행일** 2017년 1월(잠정)

## 3.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 개편

4차 산업혁명 등 최신 산업트렌드를 반영하여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훈련의 직종을 개편할 계획입니다.

- 2016년 현재 114개 직종이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.  
- 이 중에서 훈련실적이 없고, 성과가 저조한 직종은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에서 제외하고, 사물인터넷, 빅데이터 개발·활용, 핀테크, 증강현실 등 신산업 직종을 새롭게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.

또한, 그간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을 비정기적으로 개편해왔으나, 앞으로는 매년 국가인력양성협의회(위원장: 고용노동부 차관)를 개최하여 정기적으로 직종을 개편할 계획입니다.

####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 개편 계획

- 추진배경** 4차 산업혁명 등 최신 산업트렌드 반영
- 주요내용** ① 훈련실적 및 성과 저조 직종 제외  
② 사물인터넷, 빅데이터 개발·활용, 증강현실 등 신산업 직종 포함  
③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 개편 정례화
- 시행일** 2017년 1월(잠정)

## 4.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

출산으로 인한 여성근로자의 이직을 방지하고,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요인 해소를 위하여 출산전후휴가(유산·사산휴가) 급여 지원

- 2016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이 135만원이었으나, 2017년부터는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
- '17년 사업내용

- **대상** 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
※ 근속기간·근로형태·직종 등에 관계없이 부여
- **기간** 출산전후를 통하여 90일, 출산후 45일 보장 (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120일, 출산후 60일 보장)  
※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- **요건** -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를 부여받았을 것  
-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
-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
- **지급액** 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(최대 월150만원)을 휴가기간(90일)에 대하여 지원  
※ 대규모기업의 경우 휴가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만 지급

####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원

- 추진배경** 임신·출산근로자 모성보호
- 주요내용**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
- 시행일** 2017년 1월 1일

## 5. 최저임금 인상

2017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6,470원으로 인상됩니다

-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51,760원,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(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)으로 월 1,352,230원(6,470원×209시간)입니다.
-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·일용직·시간제 근로자,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됩니다.
- 다만,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,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  
- 또한,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(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)는 최저임금액의 10%를 감액(시급 5,823원)할 수 있습니다.

### 최저임금 인상

**추진배경** 최저임금법에 따라 2017년 최저임금 인상

**주요내용** 2017년 최저임금 : 시간급 6,470원

\* 일급 8시간 기준 51,760원, 월급 1,352,230원(6,470원×209시간, 주 40시간 기준 (주당 유급 주휴 8시간 포함))

**시행일** 2017년 1월 1일

## 6. 냉매 제조·수입시 냉매판매량 신고제 시행

냉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냉매를 제조·수입할 경우,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냉매판매량을 신고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.

- 지금까지는 염화불화탄소(CFCs), 수소염화불화탄소(HCFCs), 수소불화탄소(HFCs) 등 냉매로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판매량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.  
- 2016년 하반기에 냉매를 제조·수입하였을 경우, 냉매의 종류, 판매량, 판매처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2017년 1월15일까지 냉매정보관리시스템(<http://www.rims.or.kr>)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다만, 제조·수입한 냉매가 「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보고물질

에 해당하여,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된 경우는 냉매판매량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#### 냉매 제조·수입시 냉매판매량 신고제 시행 추진계획

<b>추진배경</b>	기후변화 영향이 큰 냉매의 효율적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냉매판매량 현황 파악
<b>주요내용</b>	냉매 제조·수입시 냉매의 종류, 양, 판매처 등이 포함된 신고서를 매반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냉매정보관리시스템에 제출
<b>시행일</b>	2017년 1월 1일

## 7. 위해우려제품 안전·표시기준 강화

스프레이형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을 추가하여 독성물질의 인체흡입 등 노출우려를 차단하고,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은 전(全)성분을 표시토록 하는 등 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.

- CMIT/MIT\*의 호흡노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사용금지  
\* (CMIT) 5-Chloro-2-methyl-4-isothiazolin-3-one,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(MIT) 2-Methyl-4-isothiazolin-3-one, 메틸이소티아졸론
-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이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된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, 첨가사유(용도), 함유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
-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인쇄용 잉크·토너, 옷 구김 방지용 다림질보조제, 실내·외 물놀이시설 등에 미생물 억제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조제를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 및 안전기준 신설

####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·표시기준 강화

<b>추진배경</b>	국민건강에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 추가 및 안전·표시기준 강화
<b>주요내용</b>	① 위해우려제품 3종 신규 지정(인쇄용 잉크·토너, 다림질보조제, 살조제) ② 안전·표시기준 강화(CMIT/MIT의 스프레이형제형 사용금지, 표시사항 추가)
<b>시행일</b>	2016년 12월(잠정, 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중) 